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6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정희용·김선교·김종양

신성범 · 강대식 · 김위상

주호영 · 강선영 · 강승규

이종욱ㆍ이양수ㆍ김도읍

박덕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한 자율방범대는 이후 국가 경찰력을 보조하는 '안전파수꾼'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부상·사망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역사회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을 수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및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의 수행 또는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자율방범대의 숭 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 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 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u><신 설></u>	행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각각 각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u><신 설></u>	지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 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의

수행 또는 제10조에 따른 교육

· 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
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